

## 칼럼

오 창 국 목사  
백운교회

가 바로 그 깊은 한숨을 대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미와 수입쌀 방출을 단행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 정책이 진정 정의와 공의를 지향하는 것인지 되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특히 악하고 소외된 이들을 봄볼 것을 강조합니다. 힘들게 땅을 일궈온 농민들의 땀과 수고를 정당하게 인

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아니나는 의심을 지우지 못합니다. 불과 몇 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시각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대여’라는 어설픈 변명 아래 농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여가 아니라, 고통을 전가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농민들이 외치는 “밥 한 공기 300원”이라는 구호는 단순한 가격 요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까? 이 물음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정의와 공정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외연화, 정부의 편의만을 위한 정책을 계속한다면 사회 전체가 병들고 분열될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 앞에서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심장을 싸우는 용기로, 농민들의 편에 서서 정의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목은 무엇일까요?

첫째, 교회는 예언자적 소명을 가지고 사회적 불의에 대해 침묵하

## 혹서 이겨낸 땅의 눈물, 풍요 속의 정의를 물다

처서(處暑)가 지나고, 백로(白露)를 목전에 둔 9월 초.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이 불과 며칠 전 우리를 괴롭히던 뜨거운 솟결을 멀리 밀어내는 듯합니다. “가을바람이 한 번 불어오면, 비로소 세상 만물의 참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는 경구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와 함께 진실을 미주할 시간을 줍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들녘에 평화로워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풍요의 계절에 농민들의 마음속엔 왜 이토록 서늘한 바람만 불고 있을까요? 얼마 전 울려 퍼졌던 신문고 소리

정하기는커녕, 수확기 쌀값 하락을 유도하여 이들의 삶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정책이 과연 “사랑”이라 는 이름에 합당할까요? 이는 눈앞의 편의를 위해 공동체의 근간을 훼손하고 악자에게만 혜택을 강요하는 불의한 처사입니다.

지난해에도 농민들은 피땀 어린 벌을 헐값에 팔아야 했고, 정작 쌀값이 오른 뒤에는 유통업체만 이득을 취했던 서글픈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같은 과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많은 목소리는 이러한 정책이 수확기 쌀값을 낮춰 공공비축미 수매가

땅과 노동이 마땅히 받아야 할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여덟 근의 땅을 헤어 농사지었는데도 한 기 생수값만도 못한 가격”에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휴대전화 한 대 값으로 8년치 쌀을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민과 아이들이 누군가의 피눈을 담긴 밥을 먹고 어찌 공정사회를 살 수 있으며, 건강한 사회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지 않고 당당히 진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공동체의 빚과 소금이 되어, 농민들의 정당한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교회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정부와 사회에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맺는 영적 암레가 단지 개인의 영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덜고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며 창조 세계를 물보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 1987년 10월 29일 개정되고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전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제정되고 17일 공포하였고 9번 개정되었다. 다음은 전문 내용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혁명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례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다음은 내용이다. 제1장은 총강으로 1조부터 9조까지이다.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10조부터 39조까지이다. 제3장은 국회로 40조부터 65조까지이다. 제4장은 정부로 1절 대통령부터 66조부터 85조까지이다. 2절은 행정부로 100조까지이다. 제5장은 법원으로 101조

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읽어 보아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 단어가 조금 어렵더라도 초등학교 5-6학년 때부터 또는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에서는 정식과목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집문에서 럴 자꾸만 읽어보고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것임을 증명하고 주장할 수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권한을 가진 정부는 바뀔 수 있으나 권력의 주인이 국민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최 용 남

• 한국청소년사업연구소 대표  
• 예장통합 전남노회 전도목사  
• 행복한 세상 선명한 미래 12 저자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알아요?”

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부터 110조까지이다. 제6장은 헌법재판소로 111조부터 113조까지이다. 제7장은 선거관리로 114조부터 116조까지이다. 제8장은 지방자치로 117조부터 118조까지이다. 제9장은 경제로 119조부터 127조까지이다. 제10장은 헌법개정으로 128조부터 130조까지이다. 글씨 크기 10포인트 25쪽 분량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사람들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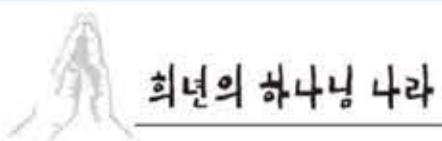
고, 또 구약 농사력에서 새해가 시작되는 7월 1일 나팔절도 아니고, 왜 하필 7월 10일 속죄일로 삼았을까?

여기에는 심오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회년의 세 가지 관계 회복 가운데,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아말로, 다른 두 가지 관계를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고 땅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되어야 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결해 되지 못하므로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회년의 시작을 속죄일로 삼으신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시어 바사 왕 고로스를 세워,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키고(정치적 차원의 자유), 고토로 끌려온 토지를 회복하게 해 주시더라도(경제적 차원의 자유),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에 계속 머물러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멀망하여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토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세 가지 차원의 자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유는 바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차원의 자유는, 다시 머슬이로 전락하지 않고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가문의 기업 토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회년에는 자기의 가족과 자기 가문의 기업 토지로 돌아간다. 그런데 회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족과 토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가족보다 더 참된 가족이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업으로서,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기업 토지에서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 창 수 목사

• 기독교학 박사  
• 기독교경제학&사회윤리 전공  
• 회년사회 연구위원  
• 주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지보다 더 참된 기업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채, 가족과 토지로만 돌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회년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먼저 속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회년의 시작을 속죄일로 삼으신 것이다.

회년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해야 한다. 그런데 이 회년의 자유는 세 가지 차원을 갖는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 차원의 자유, 정치적 차원의 자유, 경제적 차원의 자유이다. 이 세 가지 자유는 모두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탈 from...)와 ‘무엇으로 향하여 가는 자유’(향 toward...)의 두 측면을 갖는다.

먼저 종교적 차원의 자유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적 차원의 자유는, 머슬이에서 해방되어,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차원의 자유는, 다시 머슬이로 전락하지 않고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가문의 기업 토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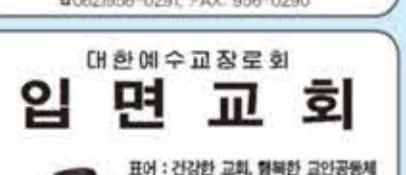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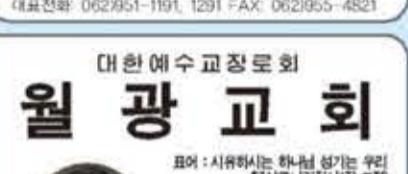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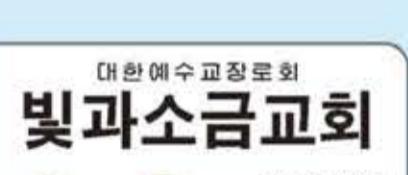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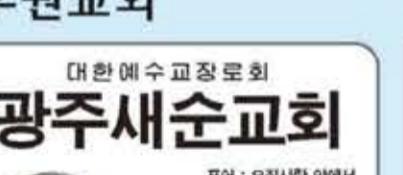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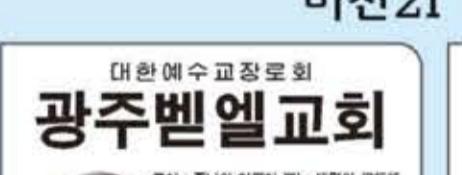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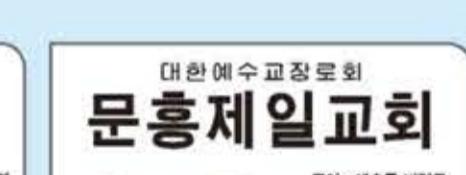
## 회년과 속죄일

상태에서 해방되어, 그 기업 토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차원의 자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유는 바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종교적 차원의 자유)이다. 왜냐하면 끝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회복한 다른 두 가지 자유, 곧 머슬이 해방(정치적 차원의 자유)과 토지 회복(경제적 차원의 자유)을 바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다시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시어 바사 왕 고로스를 세워,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키고(정치적 차원의 자유), 고토로 끌려온 토지를 회복하게 해 주시더라도(경제적 차원의 자유),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에 계속 머물러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멀망하여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토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세 가지 차원의 자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유는 바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회년을 다룬 속죄일에 선조하도록 하신 것이다.

## 미션21 후원교회



표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소서” (골전4:2)

• 주일오전 1부 ..... 9:00  
2부 ..... 11:00  
3부 ..... 13:00  
• 주일오후 ..... 3:00  
• 수요예배 ..... 7:00  
• 수요군 ..... 7:00  
• 새벽기도회 ..... 5:00

6126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15번길 607(화정동)  
대표전화: 062-266-8025 편스: 062-266-8026

표어: “예수를 바리고 끌어온 교회”

• 주일오전 1부 ..... 7:30  
2부 ..... 9:00  
3부 ..... 11:00  
• 주일오후 ..... 1:00  
• 수요예배 ..... 4부 오전 ..... 10:30  
2부 오후 ..... 7:30  
• 새벽기도회 ..... 7:30  
• 세벽기도회(월~일) ..... 5:30

61217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7번길 104-2  
대표전화: 062-266-8027 FAX: 062-266-8028

당임 한 상 영 목사

• 주일오후 ..... 7:00  
• 수요예배 ..... 7:00  
• 새벽기도회 ..... 7:00

61016 광주광역시 북구 마륵 40-16  
대표전화: 062-574-9004

표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활의 공동체”

• 주일오전 1부 ..... 7:00  
2부 ..... 9:00  
3부 ..... 11:00  
• 주일오후 ..... 1:00  
• 수요예배 ..... 7:00  
• 새벽기도회 ..... 7:30

61024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46(화정동)  
대표전화: 062-267-9595 FAX: 062-267-9596

당임 리 종빈 목사

• 주일오전 ..... 7:00  
• 주일오후 ..... 1:00  
• 수요예배 ..... 7:00  
• 새벽기도회 ..... 7:30

61019 광주광역시 북구 청암로 18(상봉동)  
대표전화: 062-571-1004 FAX: 062-571-1004

표어: “오늘은 광주! 내일은 세계를!” (골1:18)

• 주일오전 1부 ..... 9:00  
2부 ..... 11:00  
3부 ..... 13:00  
• 주일오후 ..... 1:00  
• 수요예배 ..... 7:00  
• 새벽기도회 ..... 7:30

61025 광주광역시 북구 수원로 19번길 39-3  
대표전화: 062-595-0291 FAX: 062-595-6181

당임 김 철 목사

• 주일오전 ..... 7:00  
• 주일오후 ..... 1:00  
• 수요예배 ..... 7:00  
• 새벽기도회 ..... 7:30

62457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원로 11번길 36  
대표